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23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4364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239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이진석, 강재신, 유민욱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권지혜, 김여진

변론 종결 2021. 4. 21.

판결 선고 2021. 5. 26.

주문

1.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8. 4. 2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각 61,652,05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61,652,0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7,142,857원 및 그 중 85,714,286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21,428,571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각 2019. 5. 23.까지는 연 4.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D은 각 71,428,571원 및 그 중 57,142,857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14,285,714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각 2019. 5. 23.까지는 연 4.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은 107,142,857원, 피고 C 및 D은 각 7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4.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망인은 2018. 4.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4. 22.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D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C, D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2018.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전후의 사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559,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②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③ 채권최고액 58,5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8. 7. 17.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모두 피고 C으로 변경되었고, 2018. 8. 8. 채권최고액 27,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된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① 2015. 11. 26.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이자 월 0.4%, ② 2016. 4. 26.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26., 이자 월 0.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망인은 이에 대한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도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망인은 2018. 2.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위 대여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07,142,857원(= 250,000,000원 × 상속분 3/7), 피고 C, D은 각 71,428,571원(= 250,000,000원 × 상속분 2/7)과 위 각 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차용금 채무의 존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차용증과 관련하여,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에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26.로 정하여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1호증의 2(차용증)에는 '망인이 2015. 11. 26.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로 정하여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여금 채무를 상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영수증이 없다거나 망인은 그 당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내용을 부인하거나 그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월 0.4%(연 4.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이자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8. 2.까지 월 0.4%에 해당하는 이자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07,142,857원{= 85,714,286원(=

제1대여금200,000,000원 × 상속분 3/7, 원 미만 올림) + 21,428,571원(= 제2대여금 50,000,000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85,714,286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로 보이는 2018. 12. 1.부터, 21,428,571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4. 2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5. 23.까지는 민사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4.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게, 피고 C, D은 각 71,428,571원{= 57,142,857원(= 제1대여금200,000,000원 × 상속분 2/7, 원 미만 버림) + 14,285,714원(= 제2대여금 50,000,000원 × 상속분 2/7,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57,142,857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로 보이는 2018. 12. 1.부터, 14,285,714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4. 2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5. 23.까지는 민사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4.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피고들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익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 B에 대한 위 청구도 채무자의 지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위를 표시하였을 뿐 위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B이 피고 지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107,142,8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8. 4. 15. 망인의 사망과 함께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H 부산경남지사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I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2021. 4. 5.자 F조합 신재송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8. 4. 22.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991,820,700원인 사실, 2018. 4. 22. 기준으로 망인의 F조합 신재송지점, J조합에 대한 5건 대출금 채무의 합계는 574,842,033원¹⁾인 사실, 2018. 4. 22. 기준으로 망인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남해군 K 전 1,412m²(이하 '남해군 제1토지'라 한다)의 감정평가금액은 45,184,000원인 사실, 망인이 2016. 12. 1. 남해군 L대 215m² 및 M 대 83m²(이하 '남해군 제2토지'라 한다)을 4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2018. 6. 5. 2018. 4.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3/7 지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4. 22.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B의 상속지분의 가치는 425,066,014원²⁾, 남해군 제1토지에 대한 피고 B의 상속지분의 가치는 9,682,285원³⁾이며, 남해군 제2토지에 대한 피고 B의 상속지분의 가치는 17,142,857원⁴⁾ 원으로 추인되며(2016. 12. 1.경 매수금액인 40,000,000원을 2018. 4. 22.경 위 토지의 시가로 보기로 함), 피고 B의 F조합에 대한 5건 대출금 채무의 합계는 246,360,871원⁵⁾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이 2018. 4. 22. 기준 피고 B의 적극재산은 451,891,156원(=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425,066,014원 + ② 남해군 1토지 9,682,285원 + ③ 남해군 2토지 17,142,857원)이고, 소극재산은 353,503,728원(= ①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107,142,857원(이자 제외)6) + ② F조합 신재송지점 및 J조합에 대한 채무 246,360,871원)인데, 피고 B이 2018.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7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C, D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B의 나머지 적극재산 가액인 26,825,142원(= 451,891,156원 - 425,066,014원)이 소극재산인 353,503,728원(일부 이자 제외)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8. 4. 22. 기준,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각 부동산	F조합 신재송지점, J조합	991,820,700	425,066,014	574,842,033	246,360,871
남해군 제1토지의 1/2지분		22,592,000	9,682,285		
남해군 제2토지		40,000,000	17,142,857		
원고에 대한 채무				250,000,000 (이자제외)	107,142,857 (이자제외)
			451,891,156		353,503,728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C, D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기, 피고 B의 재산상태, 피고들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과 원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 D이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8.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2021. 4. 5.자 F조합 신재송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근저당권자 F조합 명의로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의 2018. 4. 22. 기준 대출 잔액은 합계 533,152,701원(= 430,000,000원 + 66,882,147원 + 36,270,554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3. 25.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1,109,614,0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은 247,054,863원 [= 576,461,349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인 1,109,614,050원 - F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533,152,701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이고,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35,026,040원(제1대여금 원본 및 지연손해금 107,400,873원7) + 제2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27,625,167원)8) 이므로, 결국 원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135,026,04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3,304,109원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3,304,109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의 가액배상 금액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1/2 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3 지분(= 7분의 3 지분 $\times$ 1/2)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각 61,652,054원(= 123,304,109원 $\times$ 1/2, 원 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위 61,652,0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세현

판사이은혜

판사김라미

별지

1) = 430,000,000원(F조합 신재송지점 (계좌번호 1 생략)) + 66,882,147(F조합 신재송지점 (계좌번호 2 생략)) + 36,270,554원(F조합 신재송지점,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계좌번호 3 생략)) + 12,000,000원(J조합, (계좌번호 4 생략)) + 29,689,332원(F조합 신재송지점, 마이너스 신용대출 (계좌번호 5 생략))

2) 991,820,700원 $\times$ 피고 B 상속분 3/7(원 미만 버림)

3) 45,184,000원 $\times$ 망인의 지분 1/2 $\times$ 피고 B 상속분 3/7(원 미만 버림)

4) 40,000,000원 $\times$ 피고 B 상속분 3/7(원 미만 버림)

5) 574842033원 $\times$ 피고 B 상속분 3/7(원 미만 버림)

6) 21,428,571원에 대한 2018. 3. 1.부터 2018. 4. 22.까지의 연 4.8% 이자는 149,354원에 불과하여 계산의 편의상 이자를 제외한다.

7) [01] 85,714,286 $\times$ [174/365, (=2018.12.01.부터 2019.05.23.까지)] $\times$ 4.8% = 1,961,330

[02] $85,714,286 \times [8/366, (=2019.05.24.부터 2019.05.31.까지)] \times 15\% = 281,030$

[03] $85,714,286 \times [1 + 325/365, (=2019.06.01.부터 2021.04.21.까지)] \times 12\% = 19,444,227$

이자 합계 21,686,587원, 원리금 합계 107,400,873원

8) [01] $21,428,571 \times [1 + 84/365, (=2018.03.01.부터 2019.05.23.까지)] \times 4.8\% = 1,265,283$

[02] $21,428,571 \times [8/366, (=2019.05.24.부터 2019.05.31.까지)] \times 15\% = 70,257$

[03] $21,428,571 \times [1 + 325/365, (=2019.06.01.부터 2021.04.21.까지)] \times 12\% = 4,861,056$

이자 합계 6,196,596원, 원리금 합계 27,625,167원